

제 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1. 회 기: 自 단기4285(1952)년 11월 12일 至 11월 13일 (2일간)

2. 장 소: 의회 의사당

3. 출석의원 성명

劉正斗, 李福柱, 明南喆, 金南鎭, 李在洪, 林一男, 金京炫, 文宅鎬,
金八用, 李文吉, 鄭應杓, 金慶禧, 朴贊圭, 金吉煥, 金子洪, 吳世一,
金永完

2) 불참의원: 4명

李小圭, 金采庸, 金三星, 陳福春

3) 참석한 자치단체의 직원

河東鉉 시장, 吳在鵬 건설과장, 梁甲承 관리과장

4. 개 폐회식 절차:

5. 회의사건:

1) 의결사건

- (1) 목포시세 조례 개정의 건
- (2) 목포시소방세 조례 제정의 건
- (3) 목포시도선규정 조례의 건
- (4) 단기4285(1952)년도 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의 건

2) 보고사건:

- (1) 제 8회 임시회의 회의록
- (2) 공동하역장소 부근에 있는 노점철거에 대한 건의 결과의 건
- (3) 전 朴在祐시장 복직촉진 건의문

※ 제 1일: 11월 12일(수요일)

1. 개폐의 시: 오전 10시 40분 개의, 오후 3시 15분 폐의

2. 의사일정

1)보고사항

- (1) 제 8회 임시회의 제 2일자 회의록
- (2) 전 朴在祐시장 복직촉진 건의문
- (3) 부두 부근에 있는 노점철거에 관한 건의문
- (4) 목포시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으로 인한 수입증액 통고의 건

1) 부의안건

- (1) 목포시세조례 개정의 건

3. 개회성립

참석의원 17명

불참의원 4명

4. 토의사항:

◇ 鄭應杓의원

- 방금 낭독한 건의문 내용을 보면 무조건 노점을 전부 철거하기로 했는데 내가 그 문제를 발언한 것은 하역작업에 지장이 있는 장소만 철거하자는 것이니 수정하기 바란다.

◇ 李在洪의원

- 鄭應杓의원과 동감이다.

노점철거 문제에 있어서는 劉의장 이하 5명의 교섭위원이 직접 교섭키로 되어 있는데 건의문만 내는 것은 안될 일이다.

◇ 金永完의원

- 의회에서 결의된 것은 즉시 실천에 옮기도록 하고 오늘과 같은 형식적인 일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주의해 주기 바람

◇ 李在洪의원

- 오늘 의회가 끝나면 곧 관계당국에 가서 교섭토록 하자.

◇ 李福柱의원

- 일단 의회에서 결의된 것은 시민과의 공약대로 성취할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할 것이며, 금반 일은 의장의 태만이라고 본다.

◇ 鄭應杓의원

- 건의문을 발송하자는 발언은 전혀 하지 않고 교섭위원에게 교섭토록 하였는데 사무당국에서 마음대로 한 것은 의회의 결의를 무시한 것이니 속히 건의문을 철수하자.

◇ 劉正斗 의장

- 오늘 회의가 끝나면 교섭토록 하자.

◇ 鄭應杓의원

- 당초 발언할 때에 교섭처를 해사국과 시청까지 포함했는데 빠져 있으니 추가하기로 하자.

◇ 李在洪의원

- 재검토키 위하여 회부한 미진 안건은 전연 의회에 다시 회부되지 않았으며, 전반 제 6회 임시의회 제 5차 회의록도 수정하여 차기 의회에 회부키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보고도 없는 것은 사무당국의 책임인가, 의장에게 책임이 있는가? 알 수 없으니 확실히 말씀해 주기 바란다.

◇ 朴燦大 서기

- 사무당국의 어려운 입장을 간명함과 동시 제 6회 임시의회 제 5차 회의록 수정 보충안 낭독

◇ 劉正斗 의장

- 방금 낭독한 수정 보충안에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하겠음.

◇ 鄭應杓의원

-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노점을 전부 철거하라는 설이 항간에 유포되어
세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으니 원안대로 건의문을 취소하고 교섭위원으로서
직접 교섭하자.

◇ 李福柱의원

- 하룻밤 사이에 난데없이 판자집을 가져다 놓고 있어 하역 작업에 지장을
준 것은 도의상으로 보아서도 안될 일이다.

이 문제는 행정당국에 책임이 있는 것이나 의회에서 일단 결의된 것은 용
두사미격이 되지 않도록 금반 만큼은 철두철미 실천해서 안될 때는 제 2단
계까지 취하도록 하자

◇ 鄭應杓의원

- 용두사미격이 되기 위하여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당초 발언과 차이가 있기에
말한 것이다.

※ 고하도 이충무공 비각 보수공사에 관한 건

◇ 동 기념협회 조회련

- 당시 경비부 참모장 및 李在洪의원으로부터 보축공사 실시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설명요약 생략)

◇ 金京炫의원

- 이충무공의 호국정신을 앙양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백圓이나 천圓씩을 각
출하는 것이 좋겠다.(의견)

◇ 劉正斗 의장

- 자치법 제 129조 및 제 19조문을 낭독 해설한 후 이런 법적근거도 고려해
서 토의해 주기 바란다.

◇ 金永完의원

- 모든 문제를 기부법이니 하여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아무 사업도 못할 것

이요, 이 문제를 기념협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속히 동장을 소집할 것이며, 강권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무리한 부역을 해도 괜찮을 것이니 李在洪, 金京炫의원의 말씀대로 하면 좋겠다.

◇ 鄭應杓의원

- 동원만 되어 가지고 안될 문제이고, 건축비도 있을 것이니 세밀한 설계 내용을 말씀해 주면 좋겠다.

※ 경비부 전훈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음(생략)

◇ 劉正斗 의장

- 충무공 비각 보축공사 문제를 자치법 제 129조의 비상재해의 복구, 기타 특별히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합법적으로 인증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념협회에 의회는 비공식적으로 협조 정도로 할 것인가? 만일 합법적으로 인증한다면 예산외로 고지서를 시장이 발부할 것인가가 문제이며, 이 문제에 있어서 소송까지야 없겠지만 법 이론적으로 따지면 곤란한 것이며, 어디까지나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서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다.

◇ 鄭應杓의원

- 이 문제는 내무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확실한 검토를 한 연후에 본회의에 회부해서 결정짓자.

◇ 李在洪의원

- 보강공사는 날이 추워지면 도저히 할 수 없으며, 시기적으로 보아 내무분과위원회까지 회부해서 지연시킬 수 없는 문제이니 오늘 이 자리에서 결의하도록 하자.

◇ 劉正斗 의장

- 이 문제가 만일 경솔하게 되어지면 의회의 위신 문제도 있으니 법에 저촉이 되는가 안되는가 연구하여 명일 결정하겠음.

◇ 金永完의원

- 제 2대 민선 시장이 선출된 후 며칠이 안되었는데 요사이 풍설에 시장과 의장이 금융단을 방문하여 기채하러 같이 돌아다닌다는 이 점에 대하여 설명해 주기 바람.

◇ 河東鉉 시장

- 기채 문제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음(설명요지)

시급 반제해야 될 차입금이 조흥은행에서 임시 차입으로 4회에 걸쳐 거의 8천만圓, 교육청에 미지불한 것과 수특, 양특에 8천7백만圓, 일반 상인에게 지불할 것이 1억 8천만圓되고, 그중 시급히 반제할 것이 1억圓이 된다는 내용

◇ 鄭應杓의원

- 청내 과장급의 대폭적 인사이동과 몇 계장의 이동이 있었는데 풍설에 의하면 河시장 뒤에는 32인의 유지회가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그리고 전반에 도에서 주사시험에 합격된 자를 임명승인 신청서에 부시장까지 결재하였는데 河시장이 아직 결재가 없다고 하며, 주사시험에 불합격된 자를 부과계장으로 임명한 것은 섭섭한 일이다.

이점에 있어서 답변을 해도 좋고 아니해도 좋으나 참고로 말한다.

◇ 河東鉉 시장

- 32인의 유지회라는 것은 나로서는 전연 모르는 일이며, 전반 주사시험에 합격된 자는 주사로서 임명할 것이다.

특히,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현 진영을 가지고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으며, 재무, 회계, 건설 사무라는 것은 모두 기술사무이므로 현 부과계장은 십 수년간 그 사무에만 종사하여 그 분이면 공정한 부과사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서기로 임명한 것이며, 현 직원을 희생하지 않도록 2회나 도에 가서 절충해서 희생자가 나지 않았으며, 일단 일을 해달라고 맡긴 이상 앞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것이니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전적 나에게 맡겨 주기 바란다.

※ 번영회장 천독근씨로부터 시 번영에 대해 당면한 제반 문제를 설명(요지 생략)

◇ 河東鉉 시장

- 번영회 관계는 신중 숙고하기 위하여 다음으로 미루고 의사 일정대로 진행 하겠음

※ 목포시 세 조례개정의 건

◇ 劉正斗 의장

- 조문낭독은 생략하고 대체토론과 질의응답을 해주기 바람

◇ 鄭應杓의원

- 조례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바람

◇ 朴燦大 서기

- 조례 개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 劉正斗 의장

- 휴회선언 (오후 1시 45분)

◇ 劉正斗 의장

- 속개선언 (오후 2시 30분)

※ 목포시세 조례개정의 건(제 1독회)

※ 토론과 질의응답 약 20분간(생략)

◇ 劉正斗 의장

- 제 1독회의 대체토론과 질의응답은 완료하고 제 2독회에 회부할 것인가 결 의해 주기 바람

◇ 鄭應杓의원

- 제 2독회에 회부함과 동시 축조심의는 생략하고 즉시 제 3독회에 부의할

것을 동의(재청)

재석의원 15명 중 가 13표, 부 2표 원안 가결

◇ 劉正斗 의장

- 원안대로 통과할 것인가 가부를 묻겠음

재석의원 15명 중 가 13표, 부 2표 원안 가결

◇ 金南鎭의원

- 7월 7일 의회에서 만호동 사무감사 보고서 공금 5백52만圓을 유용한 전 만호동장 건에 대하여 7월 15일까지 기한을 두고 반제하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말이 없으니 주무계장을 불러서 알아보자 동의(재청)

◇ 朴燦大 서기

- 본인도 불러서 말했는데 마이동풍격인지 아무런 말이 없다.

곧 다시 불러서 해결 짓도록 할 것이며, 그 결과를 다음 의회에 보고하겠음

◇ 劉正斗 의장

- 긴급을 요하는 소방세 문제, 용당 도선료 인상문제 등이 있으니 1일 연장하는 것이 여하한가?

◇ 李福柱의원

- 긴급을 요하는 문제이니 1일 연장할 것을 동의(재청 가결)

◇ 鄭應杓의원

- 수도료가 40圓씩으로 되어 있는데 백圓씩을 받고 있으니 이왕이면 시세입을 올리기 위하여 수도료 조례도 개정토록하자

◇ 金南鎭의원

- 경찰국장 통첩에 의하여 시간이 경과되어 인분차가 이로, 용당동에 매일 같이 3, 40대씩 정지당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동절을 앞두고 극히 우려되는 문제이니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도록 경찰국장에게 건의문을 낸다든가 하여 그런일이 없도록 하자.

◇ 劉正斗 의장

- 회의록 서명위원에 金南鎭, 鄭應杓의원을 지명

◇ 劉正斗 의장

- 산회선언

(오후 3시 15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에 서명 날인함

단기 4285(1952)년 11월 12일

議長: 劉 正 斗

議員: 金 南 鎭

”: 鄭 應 杓

作成者 書記: 千 世 鳳

※ 제2일: 11월 12일(목요일)

1. 개폐의 시: 自 상오 11시 20분 개의, 至 하오 2시 50분 폐의

2. 의사일정

- 1) 목포시 소방조례 제정의 건
- 2) 목포시 도선규정 개정에 관한 건
- 3) 단기4285(1952)년도 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의 건

3. 개회 성립

1) 참석의원 : 13명

劉正斗, 李福柱, 明南喆, 金南鎭, 李在洪, 金京炫, 李文吉, 鄭應杓,
朴贊圭, 金吉煥, 金子洪, 吳世一, 金八用

2) 불참의원: 8명

李小圭, 金三星, 陳福春, 林一男, 文宅鎬, 金慶禧, 金采庸, 金永完

4. 보고사항:

- 1) 제 9회 임시의회 제 1차 회의록 통과
- 2) 공동하역장소 부근에 있는 노점철거에 대한 건의 결과보고(의장)

6. 토의사항:

◇ 鄭應杓의원

- 회의 진행에 있어 도중 다른 조건을 가지고 토의한 예가 왕왕 있는데 앞으로는 의사 일정에 의하여 의사 진행을 해달라는 발언에 이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의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회의록에 누락되어 있으니 보충하기 바란다.

◇ 鄭應杓의원

- 노점철거에 있어서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 문제에 있어서 오늘 아침이라도 시장께서 직원에게 실태조사 하라는 명령을 했는가? 만일 안했으면 차후 여하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가 알고 싶

다.

◇ 河東鉉 시장

- 아직 직원에게 지시한 바는 없으나 곧 실태조사를 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 金南鎭의원

- 동목포역 설치에 관한 문제는 교통부 허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일까지 추진 못하고 있는 것은 13만 시민에 대하여 미안한 일이다.

우리 의회에서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결의할 것이며, 건설과 설계를 본다면 공사비 4천100만圓, 인부 동원이 5,500명이면 승강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라하니 자치법 129조에 명시된 바도 있으니 매호당 천圓씩을 각출함과 동시, 5,500명의 부역 동원으로서 목포시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할까 하여 긴급동의

◇ 劉正斗 의장

- 교통부 허가에 의한 공사비는 9,700만圓인데 도저히 시민에게 날파할 수 없고 절반으로 하더라도 4,000여만圓이 필요한데 우선 절반인 2,000만圓을 조달한다 하여도 어려운 일이니 군산주정공장이 목포에 오게 되면 4, 5천만圓 기부 받을 수 있다 하니 기다려서 하면 좋겠다.

◇ 李文吉의원

- 용당도선장을 번영회에 넘겨주면 그 대책으로서 금융기관에서 2천만圓이라도 기채하여 의회와 시가 삼위일체가 되어 착공하려 했는데 아직까지 도선장 대행에 대한 결정을 보지 못하여 상황 능력이 없으므로 수포로 돌아갔다.

◇ 劉正斗 의장

-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치 못하면 허가를 취소한다 하니 의회와 번영회측에서 교섭위원을 보내어 허가취소 연기신청을 하면 좋겠다.

만일 연내에 주정공장이 오지 않으면 시민에게 날파해서라도 해야 될 것이다.

◇ 李在洪의원

- 철도국의 필요정보라도 목포시의 요망에 따라 허가를 낸 것을 언제는 진정서를 내어 허가를 신청하고 또 다시 연기신청 한다는 것은 목포의 수치스러운 일이니 이 문제는 거시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므로 각 중학교를 동원하고 2천만圓은 매호당 천圓씩 날파하면 어떠한가? 시장이 의견을 듣고 싶다.

◇ 河東鉉 시장

- 동목포역 설치에 있어서는 제가 순천시 순천철도국장을 만나 재정 관계상 공사하기 곤란하니 근처에 학교가 집단을 이루고 있으므로 정차만 해 주면 좋겠다고 말하니 국장 말이 학생들을 동원하여 근로봉사라도 해서 간이역이라도 만들 것이라는 말이 있기에 목포에 와서 각 중학교 학생들에게 샵, 들것, 팽이만 가지고 나와서 만드는데 소요 공사비 4백만圓이 필요하기에 그를 확보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지했는데 그 후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저의 견해로서는 시민에게 징수해 가지고 한다면 너무나 기일이 멀지 않는가 생각된다.

◇ 李在洪의원

- 주정공장만 믿고 한다는 것은 모순된 일이니 金南鎭의원 말대로 4,000만圓의 절반인 2천만圓을 전 시적으로 날파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 李福柱의원

- 공사비로 9천만圓과 4천만圓이란 막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2천만圓이면 승강할 수 있는 간이역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이니 전반 河시장이 하다가 중지되었던 것을 다시 박차를 가하여 학생들을 동원하고 2천만圓은 시민에게 날파해서 촉진할 것을 동의(재청)

◇ 鄭應杓의원

- 설계와 현장을 실지 가서 보고 공사비라든가 시민의 부담 등을 기술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먼저 동목포역 설치에 대한 전문분석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개의

◇ 李文吉의원

- 호별세 1, 2, 3기분도 못내고 있는 형편인데 시민에게 날파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니 전반에 경찰서서 자동차 1대 사주기 위하여 의원들이 돌아다녔다는 말이 있어서 이 문제도 의회에서 결의하여 의원들이 유지들을 방문하여 각출하면 좋겠다고 재개의

◇ 金南鎭의원

- 2천만圓 공사비의 설계 내용을 말해주기 바란다.

◇ 吳在鵬 건설과장

- 설계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생략)

◇ 李福柱의원

- 동목포역의 이용가치는 근접한 이로면이 극심하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근방에 있는 기업체와 유지층의 찬조를 받고 시내의 유지한테도 각출하면 시민에게 날파되는 액이 적어질 것이니 속히 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진할 것을 개의(재청)

◇ 鄭應杓의원

- 서 자동차를 구입한다 하면 유지들도 잘 주겠지만 동목포역 설치를 위하여 돌아다닌다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니 하루 속히 설치전문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라.

◇ 李在洪의원

- 3안 전부가 공사추진에 대하여는 반대가 없으니 5천명 학생을 동원하고 2천만圓은 매호당 1,000圓씩 날파해서 추진함과 동시 전문분과위원회를 설치하자.

◇ 金吉煥의원

- 무슨 일이 나면 의례히 독지가나 유지를 괴롭히는데 내가 사업주라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업체를 살린다는 견지에서 매호당 균일적으로 날파해야 될 것이다.

◇ 鄭應杓의원

- (영)세민들을 참작하여 등급별로 날파할 것이며,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는 5명 이상의 찬동을 받은 의원 5명으로서 구성할 것을 재개의

◇ 河東鉉 시장

- 동목포역 설치에 대한 참고 설명(설명요지)
전반 9천만圓에 대한 설계를 취소하고 2천만圓의 설계를 인증받도록 교섭위원이 가서 절충할 것

◇ 李在洪의원

- 5,000명 동원과 2천만圓을 날파하자고 동의집에 참가했는데 그를 철회하고 먼저 위원회만 구성하여 교섭위원을 파견해서 허가취소를 보류케 하자 동의

◇ 鄭應杓의원

- 그 공사의 날파와 동원은 취소하고 전문분과위원회만 구성하여 그 교섭위원으로 하여금 12월말까지 허가취소를 연기케 하자 개의 수정
위원 선정은 의장에게 일임키로(전원가결)

◇ 劉正斗 의장

- 위원선정결과는 오후회의에 발표하겠음

◇ 劉正斗 의장

- 휴회선언 (오후 1시 20분)

◇ 劉正斗 의장

- 속개선언 (오후 1시 30분)

※ 소방세조례 제정의 건

◇ 소방서장 吳宗文

- 소방서 운영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설명요지 생략 속기록 참조)

◇ 劉正斗 의장

- 본 조례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질의응답 약 10분간 있는 다음 제 2독회에 회부할 것을 선언

◇ 朴贊圭의원

- 부칙 적용년도에 있어 단기 4284(1951)년부터 라고 되어 있는데 비합법적인 일이다. 단기 4285(1952)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수정할 것을 동의

◇ 시정계 박상규

- 부칙을 단기 4284(1951)년도라 한 것은 목적세 설정허가 신청을 단기 4284(1951)년 5월에 도지사를 경유하며 내무부장관에게 품신해 놓고 그간 허가가 있을 것을 전제로 그때 그때의 도지사의 시의적 지시에 따라 단기 4284(1951)년도 호별세와 동시에 소방세를 부과징수 했고 단기 4285(1952)년도는 당초 예산 지시에 가옥세할로 되어 실지는 호별세와 동시에 부과하고 있어 이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지금에 조례를 재정하면 단기4284(1951)년도부터 적용한다고 한 것임

◇ 劉正斗 의장

- 법치국가에서 법의 근거 없이 부과해 놓고 이제 와서 입법해 달라는 것은 모순된 일이다.

◇ 李在洪의원

- 이제 조례로 제정하면서 단기 4284(1951)년도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모순된 일이니 단기 4285(1951)년도로 수정 통과하기를 동의집에 첨가

◇ 劉正斗 의장

- 수정동의에 대한 가부를 묻겠음(전원 가결)
(제 2독회 완료)

◇ 劉正斗 의장

- 본 조례안을 부칙만 수정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인가 가부를 묻겠음. 재석의원 13전원 가결로 통과

※ 목포시 도선규정 개정의 건

◇ 鄭應杓의원

- 용당 도선은 국도 연장선이어서 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에서 관리한 것이며, 시에서 재정이 있으면 무료도 도선시켜야 할 성질인데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그리 않더라도 사선을 이용하여 도선시키고 있는 것이 수십척이나 되어서 채권도 없이 천圓씩 받고 있는데 시영으로 하면서 1,400圓을 받는다면 시세 입을 올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이다.

현재 해사국에 와있는 km당 요금을 부여하는 선임 규정에 저촉되고 이에 따르는 영향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한 후에 다음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동의

◇ 李福柱의원

- 용당 도선장은 목포시세의 관건이 될 문제이며, 어디까지나 허가 보유권은 목포시에 있다.

지금 인상되는 요금은 관영이라 해서 물가지수에 비추어 많은 금액이 아니며, 또는 도선장만이 흑자를 내고 있다하니 시 재정을 도울만한 형편이 아니다.

특히, 미설된 잔교 및 파괴된 잔교를 수리하려면 시 재정을 확보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용당 도선장은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있는데 이를 분리하여 특별회계로 넘길 것이며, 허가 없는 선박은 철저히 단속하고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루 속히 잔교를 신설하고 수리해야 할 것이니 이런 정도의 요금이라면 비싸지 않다고 본다.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개의(재청)

◇ 劉正斗 의장

- 원안대로 통과할 것인가 개의부터 가부를 묻겠음
재석 13명 중 가 11표, 부 1표, 원안 가결

◇ 金吉煥의원

- 삼학도 도선에 있어서 일개인이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관리한다는 것

은 부당한 일이니 내용을 조사하여 시영으로 하도록 속히 해결하자 동의(재청)

◇ 鄭應杓의원

- 이 문제에 있어 도에서 수차 통첩도 있고 했다는데 현재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싶다.

※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음(생략)

◇ 李在洪의원

- 이 문제는 내무분과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며, 사계에 전문적인 明南喆, 鄭應杓의원을 첨가해서 실지 방안을 검토케 할 것을 동의에 첨가

◇ 劉正斗 의장

- 내무부장관에게는 건의문을, 교통부장관에게는 항의서를 제출 할 것이며, 해사국장에게는 책임을 규명해서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것이다.

◇ 明南喆의원

- 교통부장관이 객선 허가를 하는데 대하여 삼학도를 항로의 기항지로 한다면 모르나 보광동에서 삼학도까지의 항로라면 객선 허가로는 안될 것이다.

◇ 鄭應杓의원

- 먼저 해사국장에게 말을 하여 거부하면 내무, 교통부장관에게 건의문을 내자

◇ 劉正斗 의장

- 가부를 묻겠음(전원 가결)

※ 단기 4285(1952)년도 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의 건

◇ 鄭應杓의원

- 오늘에야 예산안을 받아서 검토치 못했으니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

하여 내무분과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재청 전원 가결)

◇ 劉正斗 의장

- 동목포역 설치 전문분과위원회 선정된 위원을 아래와 같이 발표
金八用,李文吉, 鄭應杓, 李在洪의원

◇ 李在洪의원

- 동 직원은 전반에 봉급을 지불하고 시 직원은 아직 7월분부터 봉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시장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또 한편 재무과에서는 시 직원 집에다 호별세를 체납처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월급은 주지 않고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이해키 곤란하다.

◇ 河東鉉 시장

-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문제로 있어서 시정운영상 극히 지장이 있는 것은, 첫째로 직원을 통솔하는데 우려되는 바이며, 둘째로 시민을 괴롭힌다는 것, 셋째로 공금에 손을 댄다는 것 등의 여러 가지가 우려되는 바이다.

그 때문에 먼저 1억圓을 기채해서 청년단 관계와 직원봉급을 지불하려 했으나 그리 하지 못하고 조달되는대로 이달 20일까지 청년단 관계를 지불하고 나머지로 이 달 말경에 봉급을 지불하려고 한다.

◇ 明南喆의원

- 호별세 징수가 아직까지 2할도 못된다 하니 실지로 징수한 것이 2할이 못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관계직원이 유용한 것인가?

철저히 조사해 주기 바란다.

◇ 河東鉉 시장

- 철저히 조사하겠다.

그리고 이달 하순경에는 직원의 전폭적 인사교류를 할 복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모든 미결된 것이 정리될 것이다.

◇ 劉正斗 의장

- 회의록 서명에 明南喆, 李文吉의원을 지명

◇ 劉正斗 의장

- 폐회선언

(오후 2시 50분)

◇ 폐회식 절차 생략: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에 서명 날인함

단기 4285(1952)년 11월 12일

議長: 劉 正 斗

議員: 明 南 喆

” : 李 文 吉

作成者 書記: 千 世 鳳